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24
----------	-------

발의연월일 : 2026. 10. 1.

발 의 자 : 송옥주 · 문대림 · 임미애
이상식 · 황명선 · 안태준
이개호 · 한민수 · 이재관
이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물유래 사료원료가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병원체에 오염된 사료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물유래 사료원료에 대한 사전 병원체 검사 의무, 검사결과에 따른 격리·회수 및 폐기 절차, 이력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동물유래 사료원료의 제조·수입 단계에서 병원체 검사를 의무화하고, 병원체 검출 시 즉시 격리·회수·폐기하도록 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수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안겨다 줄 수 있는 ASF발생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반면 유럽, 중국을 비롯한 ASF발병국들이 금지하

거나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돼지혈장이나 남은 음식물 사료에 대한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따라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신체 성분으로 만든 것과 남은 음식물의 사료 이용을 금지하고, 국내외에서 질병 전파 사실이 입증된 사료의 특정 성분과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등).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동물유래 사료원료의 병원체 검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유래 사료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바이러스·세균 등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 대상 병원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2. 구제역 바이러스
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4. 뉴캐슬병 바이러스
5. 돼지열병 바이러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체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동물유래 사료원료는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병원체 검사방법·검사기관 지정 및 검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격리 및 회수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른 검사 결과 병원체가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사료 또는 사료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격리
2. 이동 제한
3. 판매 중지
4. 회수
5. 폐기 또는 소각
6. 소독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이력관리) ① 동물유래 사료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원산지
2. 제조일자
3. 수입일자
4. 공급자
5. 운송경로
6. 검사성적서

7. 공급받은 자

- ② 제1항의 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병원체 검사를 받지 아니한 동물유래 사료 원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
- 4. 병원체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5. 제15조의3에 따른 회수·격리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6. 병원체가 검출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제36조제1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제15조의4에 따른 이력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 8. 검사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9. 검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0.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조·수입 중인 동물유래 사료원료

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병원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기관 지정, 검사방법 고시 및 전산관리체계 구축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2(동물유래 사료원료의 병원체 검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유래 사료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바이러스·세균 등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u> <u>② 제1항의 검사 대상 병원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u> <u>2. 구제역 바이러스</u> <u>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u> <u>4. 뉴캐슬병 바이러스</u> <u>5. 돼지열병 바이러스</u> <u>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체</u> <u>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동물유래 사료원료는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다.</u> <u>④ 병원체 검사방법·검사기관</u>

<신 설>

지정 및 검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격리 및 회수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른 검사 결과 병원체가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사료 또는 사료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격리
2. 이동 제한
3. 판매 중지
4. 회수
5. 폐기 또는 소각
6. 소독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4(이력관리) ① 동물유래

사료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원산지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 제조일자

3. 수입일자

4. 공급자

5. 운송경로

6. 검사성적서

7. 공급받은 자

② 제1항의 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벌칙)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병원체 검사를 받지 아니한 동물 유래 사료원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

4. 병원체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15조의3에 따른 회수·격리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병원체가 검출된 사료를 판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② (생략)	<u>매하거나 사용한 자</u> 제36조(과태료) ① ----- ----- ----- -----. 1. ~ 6. (현행과 같음) <u>7. 제15조의4에 따른 이력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u> <u>8. 검사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u> <u>9. 검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u> <u>10.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 ② (현행과 같음)
--	---